

2019~2022년도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사항 게시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~2022년도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
□ 의정비 지급결정 금액

(단위 : 연간/만원)

구 분	월정수당	의정활동비	여 비
2019년도	2018년 월정수당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(2.6%)만큼을 합산하여 반영	지방자치법 시행령(별표4) 에 따름 (1,320만원)	지방자치법 시행령 (별표5)에 따름
2020년도	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		
2021년도	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		
2022년도	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		